



제1685호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1 1 7 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도 시 재 생 과 2
재공고
- 공 고 제 1 1 2 0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4
공고
- 공 고 제 1 1 2 8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8
- 공 고 제 1 1 3 1 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 도 시 재 생 과 10
재개발정비사업]
- 공 고 제 1 1 3 6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 자 동 차 관 리 과 15
달 공고
- 공 고 제 1 1 4 7 호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 자 동 차 관 리 과 19
고 공고
- 공 고 제 1 1 5 3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 도 시 재 생 과 22
계획 인가 공고·열람
- 공 고 제 1 1 5 5 호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 자 동 차 관 리 과 24
제견인 예고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 6 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 보 건 행 정 과 26
달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 7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28
- 보 건 소 공 고 제 4 8 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식 품 위 생 과 30
공고

고 시

- 고 시 제 5 0 호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 토 지 정 보 과 32
치 고시
- 고 시 제 5 1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청소년수 도 시 재 생 과 34
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제 5 2 호 도시관리계획(만수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 시 재 생 과 36
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17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고 ·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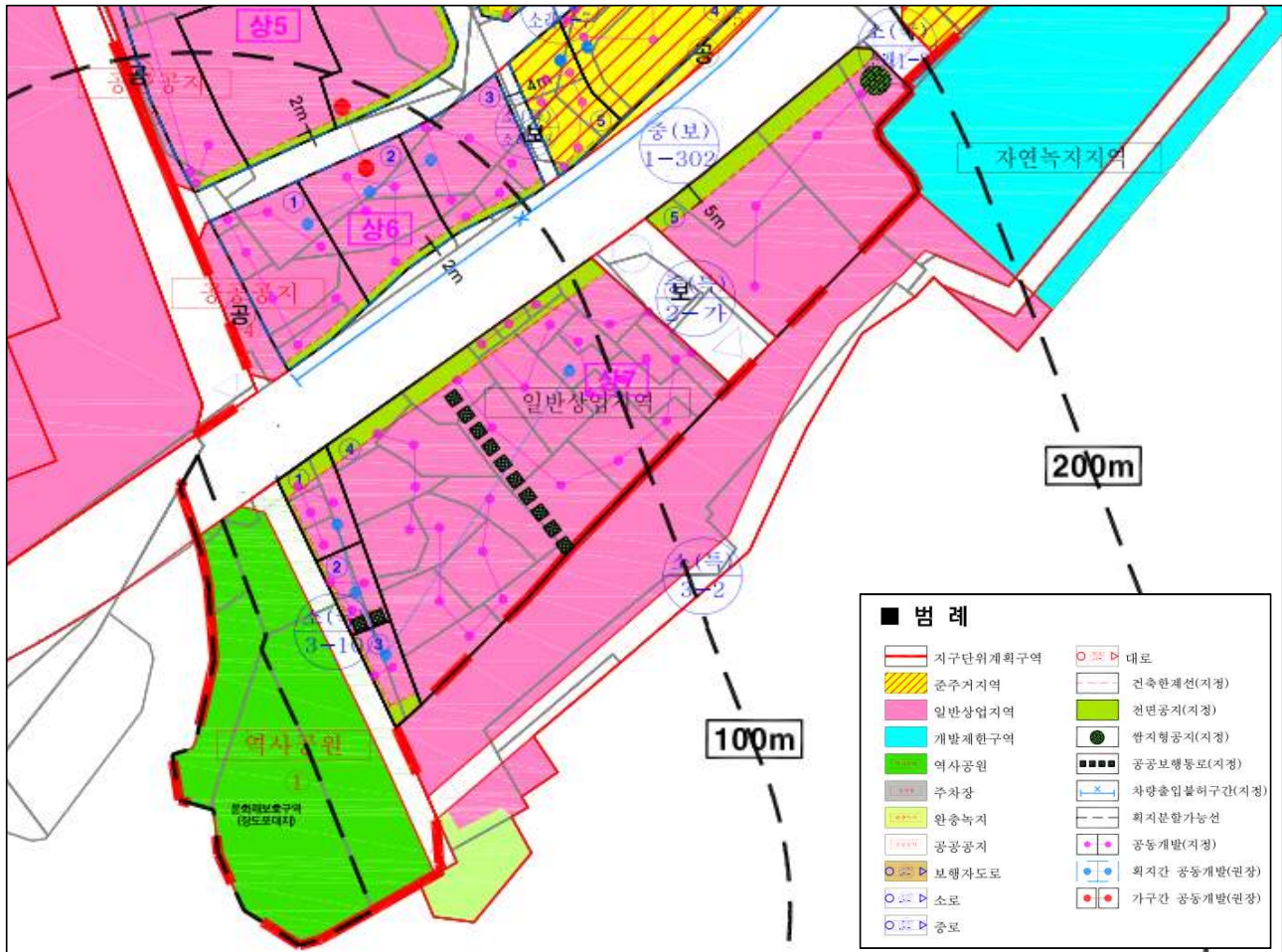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남 동 구 청 장**1.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68번지 일원
- 결정(안) 주요내용
 - (기반시설) 보행자전용도로(중로2-가) 신설 B=16m, L=46m
 - (가구·획지계획) 상7BL 공동개발 변경
 - 1개 가구, 3개 획지 → 1개 가구, 5개 획지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소로 3-10호선 변 1m 신설
 - 교통처리계획) 공공보행통로 2개소 신설
- ※ 규모있는 개발 계획 및 기부채납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 (관련도면)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20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6.2. ~ 2022.6.17.(15일)**
3. 공고대상 : **이륜차 10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06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3.3. ○ 견인일 : 2022.4.25.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 72앞 인도 위
	2022-0007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3.17. ○ 견인일 : 2022.4.1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221-2 백세설령탕 앞
	2022-000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3.25. ○ 견인일 : 2022.4.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지구대 뒤편 창고
	2022-0007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3.25. ○ 견인일 : 2022.4.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871 만수북초등학교 앞 도로
	2022-000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3.25. ○ 견인일 : 2022.4.19.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서창동 태평1차아파트 103동 담벼락 뒤편 이면도로

관
리
번
호

2022-0008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4.5.
- 견인일 : 2022.4.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631-8 인도 자전거 거치대

2022-0009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4.18.
- 견인일 : 2022.5.25.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772-6

2022-0009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4.18.
- 견인일 : 2022.5.25.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772-6

2022-0009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4.18.
- 견인일 : 2022.5.25.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성리로12 인도위

2022-0009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4.18.
- 견인일 : 2022.5.2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문화서로4번길13-18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06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 72앞 인도 위	2022.4.25.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2-0007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221-2 백세설령탕 앞	2022.4.13.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2-0007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지구대 뒤편 창고	2022.4.20.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2-0007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 871 만수북초등학교 앞 도로(불법주정차금지구역)	2022.4.20.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2-0008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서창동 태평1차아파트 103동 담벼락 뒤편 이면도로	2022.4.19.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2-0008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31-8 인도 자전거 거치대	2022.4.29.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2-0009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772-6	2022.5.25.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2-0009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772-6	2022.5.25.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2-0009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성리로12 인도위	2022.5.25.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2-0009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문화서로4번길13-18	2022.5.23.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2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6. 3. ~ 2022. 6. 18.
3. 공고대상 : 경기30도5267외 18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2년 6월 3일

남 동 구 청 장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경기30도5267	누비라1.5	한**	2022.05.31	소유자 요청
2	경기70라8008	타우너엘피지	한**	2022.05.31	소유자 요청
3	17거0358	A6 35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5.30	소유자 요청
4	249마2498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5.30	소유자 요청
5	160가9941	E300	장*진	2022.05.24	소유자 요청
6	23보2156	911 카레라 카브리올레	김*인	2022.05.24	소유자 요청
7	90소7589	봉고III 1톤	양*환	2022.05.23	소유자 요청
8	322소3233	A6 40 TD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5.23	소유자 요청
9	210가8349	A6 45 TFSI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5.23	소유자 요청
10	178우8768	BMW 520d	노*길	2022.05.20	소유자 요청
11	333마1636	BMW 520d M Sport Package	노*길	2022.05.20	소유자 요청
12	91보7053	한성1.7톤크레인집 계차	박*권	2022.05.19	소유자 요청
13	145호2419	G90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5.18	소유자 요청
14	165호9582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5.16	소유자 요청
15	231고2203	벤츠 E220 d 4MATIC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5.13	소유자 요청
16	23호0135	투싼(TUCSON)	신한카드(주)	2022.05.12	소유자 요청
17	176호1955	쏘나타(SONATA)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5.06	소유자 요청
18	21고0729	E220 CDI	유*열	2022.05.04	소유자 요청
19	53무5389	Tiguan 2.0 TDI 4Motion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5.03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31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4. 22.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7-3 일원
3. 사업 시행자 :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453-8393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6. 9. ~ 2022. 6. 23.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공시송달대상자 [상인천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_토지]

[별지 제1목록]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22수용0011)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대 부	실 제				
간석동	308-13	도	도	강*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7번길 8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268(간석동)	남인천세무서(징세과)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8 (구월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인하로548(구월동)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세무과)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633(만수동)
간석동	425-25	도	도	고*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15번길 39-1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115번길39-1(간석동)		
간석동	309-17	도	도	김*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28 (주안동) (등)인천광역시미추홀구경인로428(주안동)	시흥시청(세무과) 압류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등)경기도시흥시시청로20(장현동)
간석동	323-11	도	도	김*철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8번길 17-4 (심곡동) (등)경기도부천시원미로18번길17-4(심곡동)		
간석동	425-31	도	도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44 205호(간석동, 경인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석촌로14번길44205호(간석동, 경인빌라)		
간석동	309-17	도	도	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6 (간석동, 문현모닝빌) (등)인천광역시남동구이화로36(간석동, 문현모닝빌)		
간석동	322-16	도	도	박*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578-27 (심곡동) (등)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578-27(심곡동)		

				x1/4				
간석동	329-13	도	도	50.3㎡	박*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46-1 (도화동, 원일아파트) (등)인천광역시미추홀구제일로46-1(도화동,원일아파트)		
간석동	325-34	도	도	13.8㎡	신*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0 (서교동) (등)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30(서교동)	정읍세무서(재산법인 납세과) 압류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93 (수성동) (재산법인 납세과-티5155) (등)전라북도정읍시중앙1길93(수성동)(재산법인납세과-티5155)
간석동	309-17	도	도	45.9㎡ x12/326	유*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6 (간석동, 문현모닝빌) (등)인천광역시남동구이화로36(간석동,문현모닝빌)		
간석동	330-4	도	도	50㎡	윤*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26번길 52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626번길52(간석동)		
간석동	455-14	도	도	27.6㎡	이*택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1 107동 501호(월곶동, 진주마을 품림1차 아이원) (등)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70번길11107동501호(월곶동,진주마을품림1차아이원)	경주세무서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35 (성동동) (재산법인세과-2554) (등)경상북도경주시원화로335(성동동)(재산법인세과-2554)
"	"	"	"	"	"	"	경주시청 압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세정과-181219) (등)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동천동)(세정과-181219)
"	"	"	"	"	"	"	구미세무서 압류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79 (공단동) (체납징세과-티32737) (등)경상북도구미시수출대로179(공단동)(체납징세과-티32737)
"	"	"	"	"	"	"	북인천세무서(개인납 세2과)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44 (작전동) (개인납세2과-티24133) (등)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244(작전동)(개인납세2과-티24133)
"	"	"	"	"	"	"	시흥세무서(재산세과) 압류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 (재산세과-2476) (등)경기도시흥시마유로368(정왕동)(재 산세과-2476)
"	"	"	"	"	"	"	시흥시청(세정과) 압류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등)경기도시흥시시청로20(장현동)

제1685호

남동구 구보

2022. 6. 10. 금요일

간석동	323-11	도	도	37.9㎡ x99.174/436.7	장*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 (구월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349(구월동)		
간석동	429-13	도	도	246.8㎡	조*구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29번길 32 11동 402호 (송내동,우성아파트)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344-6(간석동)	(주)우리은행 가압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2가) (등)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51(회현동2가)
간석동	309-17	도	도	45.9㎡ x61/326	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9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329(간석동)		
간석동	321-15	대	도	34.1㎡ x37.3/207	최*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31-14 (간석동)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331-14(간석동)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관리부)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신용관리부) (등)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50(역삼동)(신용관리부)
"	"	대	대	10.4㎡ x37.3/207	"	"	"	"
간석동	309-17	도	도	45.9㎡ x52/326	한*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36 (간석동, 문현모닝빌) (등)인천광역시남동구이화로36(간석동,문현모닝빌)		
간석동	322-10	도	도	88.9㎡	한*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6-11 비동 202호 (송의동, 제물포아파트) (등)인천광역시미추홀구수봉로6-11비동202호(송의동,제물포아파트)		
간석동	337-9	대	대	115.9㎡	이*성	강원도 강릉시 곳감전길 12 412호(성남동, 제일자유상가아파트) (등)강원도홍천군내면소한동길432(창촌리)	김*임 전세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36번길 12 가동 201호(남촌동, 석촌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로36번길12가동201호(남촌동,석촌빌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3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인천연수다51** 외 25건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22. 6. 7. ~ 2022. 6. 22. 까지
4. 공고내용
 -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인천연수다51**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동 ***호(남촌동, 궁전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2	인천남동파36**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호(구월동, 구월아시아드 더블루시티)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3	46어72**	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3.	30,000
4	인천미추홀파65**	지*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5	인천부평아87**	김*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 ***호(간석동, 삼성골드빌)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6	288버61**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간석동, 청송빌라)	번호판가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500,000
7	인천남동파71**	이*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가동 ***호(구월동, 신동아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8	인천남동파29**	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주공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9	인천미추홀파89**	김*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동 ***호(만수동, 대동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30,000
10	23부12**	박*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 지층동(구월동)	번호판가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500,000
11	부산부산진타49**	박*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구월동, 이레인)	번호판가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05.16.	500,000
12	31라37**	김*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층(남촌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13	인천남동파59**	황*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M하우스)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17	인천남동타98**	송*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효성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18	인천남동파44**	명*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19	인천남동파39**	김*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롯데산장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20	인천남동파18**	우*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바동 ***호(구월동, 희망연립)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6.	30,900

제1685호

남동구 구보

2022. 6. 10. 금요일

21	인천남동파45**	오*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6.	30,900
22	인천남동타90**	오*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 *동 ***호(구월동, 성심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23	서울동작차25**	민*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한국공영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24	경기용인자07**	양*규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길 **, ***동 ***호(영천동,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번호판가림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515,000
25	50너6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구월동, 아트뷰주상복합)	봉인탈락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6.	103,000
26	인천미추홀하11**	정*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제니스빌**차)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05.17.	30,9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47호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번호미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1. 공 고 기 간 : 2022.6.8. ~ 2022.6.23.(15일)

2. 공 고 대 상 : 자동차 2대(불임 참조)

3. 견 인 일 시 : 2022.6.30.이후(견인조치)

1. 강제견인장소: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91 (주)인천폐차사업소

인천 서구 중봉대로 198번길 17 (주)한신편차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 방치장소 및 현장조사사진

위 치	승기근린공원 (주차장입구)
내 용	앞,뒤 번호판 없는 화물차량

위치도



현장사진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 방치장소 및 현장조사사진

위 치

고잔동 372-13 고물상 앞 이면도로

내 용

앞뒤 번호판 없는 사다리차

위치도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5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687),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년 9일

남 동 구 청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3. 사업규모

- A=912.2㎡ (주차대수:53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만수동	840	차	912.2	912.2	남동구청	-	
합 계				912.2	912.2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55호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견인예고 및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유 법인의 해산간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2.6.9.~2022.6.24.(15일)

2. 대 상 차 량: 86로1137

3. 견 인 일 시: 2022.6.24.이후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법,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해산간주법인)차량 내역서

연 번	접 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견인예정일자
1	2022-00141	86로1137	그랜드 스타렉스	남동서로 316번길 67 노상주차장	(주)한소닉에이 스(해산간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1904호(송도동 송도테크노 파크아이티센터)	2022.6.24.이후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6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남양엘리베이터(주) 소*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A동 2006호(송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명 : 2022년 보건소 승강기 점검대행 용역 계약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자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이상~7개월미만)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공고기간 : 2022. 6. 2. ~ 2022. 6. 16.(15일간)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453-5072

2022년 6월 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자 인적사항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2. 6. 7. ~ 2022. 6. 21.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휴게음식점	1994-0199147	코오롱유통(주)	김**	문화로 61(구월동)	-
휴게음식점	1994-0199241	카네원두커피전문점	김**	간석동 893-1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22. 7. 4.(월)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식품허가팀 032-453-2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48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아 래 -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22.6.7. ~ 2022.6.21.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동법 제22조 적용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처분 예정사항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미용업	피오니(PEONI)	이*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26-3 , 1층 일부호 PEONI(피오니)(만수동)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기한내납부시 48만원)
미용업	라라뷰티	박*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12 , 1층 155호 라라뷰티 (구월동, 힐캐슬프라자)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기한내납부시 48만원)
미용업	이미호아이래쉬 인천구월점	서*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 , 1층 119호 이미호아이래쉬인천구월점 (구월동)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기한내납부시 48만원)
미용업	사랑방미용실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	2021년	과태료60만원

			서로3번길 38 , 사랑방미 용실 (만수동, 창대상가 119호)	위생교육 미이수	(기한내납부시 48만원)
미용업	머리쟁이	변*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남로 306 , 1층 103호 머리쟁이 (구월동)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기한내납부시 48만원)
세탁업	청우세탁소	이*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 로566번길 9-9 , 청우세 탁소 (간석동)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기한내납부시 48만원)

5. 공고내용 : 위 당사자는 2022.6.21.까지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032-453-2633)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0호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남동구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22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m²

다. 지목현황 : 28개 지목

라. 고시내역 :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2022년 6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개발제한구역 제외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단위 : 원/m²)

구분	평균치	비고
전체	1,381,768	
전	779,552	
답	653,560	
과수원	572,956	
목장용지	984,346	
임야	87,842	
광천지	-	
염전	0	
대	2,264,616	
공장용지	1,626,356	
학교용지	1,945,712	
주차장	1,639,986	
주유소용지	2,475,722	
창고용지	1,543,021	
도로	683,495	
철도용지	573,932	
제방	331,092	
하천	172,154	
구거	679,189	
유지	516,288	
양어장	0	
수도용지	240,373	
공원	413,530	
체육용지	424,826	
유원지	0	
종교용지	1,676,506	
사적지	-	
묘지	892,394	
잡종지	1,024,007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58-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268	7.9	국지 도로	47	중3-307	도림동 562-3	일반 도로			중복 결정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3-268	- 신설 - 위치 : 도림동 558-4번지 일원 - 규모 : L=47.0m, B=7.9m - 중복결정(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도로) - 위치 : 소로3-268호선 일부(90㎡)는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과 중복결정	공공청사(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공공청사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도림동 562-3	12,979	-	12,979	21.12.14. (인고2021-504호)	소3-268과 중복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공공 청사	- 중복결정(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도로) - 위치 : 소로3-268호선 일부(90㎡)는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과 중복결정	공공청사(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청소년 수련시설	인천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도림동 562-3	12,979	-	12,979	21.12.14. (인고2021-504호)	소3-268과 중복결정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청소년 수련 시설	- 중복결정(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도로) - 위치 : 소로3-268호선 일부(90㎡)는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과 중복결정	공공청사(남동경찰서 임시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2호

도시관리계획(만수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만수1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만수1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만수1지구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	만수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일원	586,332.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86,322.9	100.0	
일반주거지역	573,794.9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74,233.0	12.7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144.1	37.4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417.8	47.8	
자연녹지지역	12,528.0	2.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794	대1-14	중1-6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0	15~18	집산도로	465	중1-60	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	15	집산도로	550	대1-14	중1-6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1	중2-34	중2-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4	특수도로	16	중2-34	소3-11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7	소3-22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9	소3-22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5	소3-8	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79	소2-1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71	소2-1	소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1	소2-1	소3-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06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94	소3-14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94	소3-14	소3-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84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120	소2-1	소3-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86	소2-1	소3-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180	소2-1	소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60	소2-1	소3-17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60	소2-1	소3-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271	소2-1	소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60	소2-1	소3-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8	소2-1	소3-1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61	소3-14	소3-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327	소2-1	중2-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00	소3-5	소3-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3	4	특수 도로	26	소3-17	소3-8	보행자 전용도로	-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56-3 일원	-	증) 336.4	336.4	-	
신설	2	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67-6 일원	-	증) 332.9	332.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만수동 56-3 일원 - 면적 : 336.4㎡	○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만수동 67-6 일원 - 면적 : 332.9㎡	○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59	만수 공원	근린 공원	남동구 만수동 15번지 일원	12,528.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70	인수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69번지 일원	1,816.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128	아단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37번지	4,005.3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기정	138	등지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만수동 28번지	2,400.1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2) 녹지(변경 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	완충녹지	대로1-14호선변	12,646.0	건설부고시 제1984-591호 (1984.12.31.)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만수북중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10번지	16,032.5	-	
기정	2	만수여중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27번지	12,269.9	-	
기정	3	조동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동 11번지	12,178.9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4	인수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동 47번지	13,776.5	-	
기정	5	만수 중학교	중학교	남동구 만수동 48번지	12,765.0	-	
기정	6	새말 초등학교	초등 학교	남동구 만수4동 26번지	8,804.2	남동구고시 제2001-46호 (2001.10.05.)	

※ 새말초등학교는 기 결정사항 반영

○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체 육 시 설	배드민턴장	만수동 35번지 일원	1,415.4	남동구고시 제2016-37호 (2016.04.08.)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9	만수주공내 하수도	간선 하수도	남동구 만수동 397번지	7,510.8	-	
기정	10	만수주공내 하수도	간선 하수도	남동구 만수동 29-2번지	418.3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A)(변경)

구 분	가구 번호	규 모(㎡)	획지수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기정	1	1,606.2	9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	1,474.4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3	1,548.1	9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4	1,117.9	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5	2,042.5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6	1,794.3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7	3,369.9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8	2,083.9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변경	8	1,747.5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9	3,072.8	1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0	1,251.9	7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1	1,367.0	7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2	941.6	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3	1,403.4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4	1,999.2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5	2,308.2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6	2,503.8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7	821.1	5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8	1,683.2	1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19	3,334.7	20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변경	19	3,001.8	1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0	2,369.3	14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1	2,318.9	12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2	1,752.7	16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3	1,270.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4	1,445.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기정	25	1,373.1	8	단독주택	60	200	3층이하

나) 공동주택용지(B, C)(변경 없음)

구분	가구 번호	규 모(㎡)	획지수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기정	26	21,872.0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27	95,439.0	4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28	26,900.2	1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29	110,651.8	3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30	30,053.0	2	공동주택(C)	50	250	15층이하
기정	31	39,682.0	6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2	8,103.8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4	17,865.0	2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기정	35	14,604.0	1	공동주택(B)	60	250	5층이하

※ 가구번호 33은 학교로 기 결정된 사항임 : 남동구고시 제2001-46호

2)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 별표4】 건축물의 색채 계획

【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별표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계획

【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A)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만 허용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 학원(예능계, 기술계), 독서실 - 노래연습장(지상층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중·고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 (B)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아파트(5층이하) - 연립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 (C)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아파트 - 부대시설 -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용도	건축물의 형태	비고
단독 주택 용지 (A)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함.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단, 조립식 경량철골조는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하며,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5cm 이하로 보행자 접근 강화	
공동 주택 용지 (B, C)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 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용도	건축물의 배치	비고
단독 주택 용지 (A)	○ 건축물의 전면을 환경적(일조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공동 주택 용지 (B, C)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공공 시설	○ 건축물의 전면을 환경적(일조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별표4】 건축물의 색채 계획

용도	건축물의 색채	비고
단독 주택 용지 (A)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 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 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공동 주택 용지 (B, C)	○ 단지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 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 ~ 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용도	기 타 사 항		비고
단독주택용지(A)	차량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 출입 불허구간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 이내 구간(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시설	○ 법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권장) ○ 대상부지의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대지안의조경	○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권장)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B, C)	차량동선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내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주차시설	○ 공동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 시설을 설치 ○ 지상주차장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권장)	
	단지내조경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를 권장	

【별표6】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계획

용도	도 시 계 획 도 로	
도시 계획 도로	가로 시설물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식재	○ 지구내의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 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남동구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 6~8m를 기준으로 함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 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연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도시 계획 도로	조명 시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 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 조명 시설 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7】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 ①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표시
- ② 한 건물내 같은층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폭은 점포 점유 가로폭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③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이내. 다만, 층간 벽면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④ 세로형간판은 부착금지. 다만,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주계단입구) 기둥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⑤ 1개의 건물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
- ⑥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⑦ 돌출 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⑧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단,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⑨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다.
- ⑩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